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17년 7월 7일(금) 오후 2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 순 서 —————■

<1부> 주제별 토론

■ 사 회

- 현진권 (前 자유경제원 원장)

■ 토 론

- 대학평준화 정책: 김상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 사학 무력화 시도: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자사고/특목고 폐지: 오세목 (자사고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
- 교육감 선거의 과제: 김정욱 (前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간사)

<2부> 종합 토론

■ 사 회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



■————— 목 차 —————■

■ 주제별 토론

주제1. 상생대학 네트워크 진단 및 부작용

- 김상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7

주제2. 사학 통제와 사학법인 무력화 시도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31

주제3. 자사고 폐지, 시대착오적 교육 역주행

- 오세목 (자사고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 41

주제4. 보수교육감 단일화가 답이다!

- 김정욱 (前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간사)..... 47



상생대학 네트워크 진단 및 부작용

김 상 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교육공약 중에는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이 있다. 이 공약은 ‘대학입학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로 구체화 된다. 이 중 대학입시와 직접 관련된 공약은 ‘대학입학 보장제’이며 이것은 대학체제 개편안으로 제시한 ‘상생대학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대학입학 보장제’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부의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생대학 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은 대학평준화를 주요 골자로 한 ‘자사고 vs 혁신학교와 일반고 구도’의 대학 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 상생대학 네트워크란?

II.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의 문제점

- 세계관, 교육철학, 현실진단의 측면

III. 실행 결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 ‘자사고 vs 혁신학교와 일반고’ 구도의 대학 버전

IV. 프랑스의 입시와 현실

V. 맺는 글

I. 상생대학 네트워크란?

<인용출처>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

초· 중등교육 정상화-입시교육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을 제안한다

-서울시 교육청-

※ 최대한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필요에 의해 일부 편집과 생략이 있습니다.

또한, 출처에 의하면 본 안에서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대학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상(像)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고정된 안은 아닙니다.

1. 제안의 주요 취지

- 서열화 된 대학체제 하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블랙홀’처럼 초· 중등교육에 악영향. 따라서 초· 중등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근원적 계기가 필요함.
- 대학 입시로 인하여 우리 교육에 만연된 점수 경쟁,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풀이식 교육 등 고교교육이 파행. 대학입시가 학교 간의 과열 경쟁을 낳고 그것이 사교육 팽창으로 사회 문제. 사교육의 완화를 위해서도 대학체제 개혁이 필요함.
-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와 사회 및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간의 괴리가 대단히 커져 있음. 현재의 대학학벌은 그 자체가 ‘수월성’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기득권’과 같음. 그래서 사회와 시장이 요구하는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 사회적 기득권으로서의 대학서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음
- ‘수직서열화’된 대학구조 내에서의 상층대학 혹은 학벌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완화시켜야 사교육 시장의 확장과 초· 중등교육의 왜곡을 벗어날 수 있음. 또한, 수직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수평적 재구조화하여 사회경제적 부에 의한 학부모의 서열화가 자녀들의 교육서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아울러 통합국립대학을 포함하는 대학 공유네트워크는 지방경제의 몰락 및 서울 집중화를 완화하는 의미를 가짐.

- 현재 한국사회는 대학진학 인구가 수년간에 20만 명이나 감소하는 거대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음. 그런데 이를 단순히 진학학생 수의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별 정원의 재조정이라는 미봉적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부의 대학개혁도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20년 후의 한국사회를 염두에 두면서 미래지향적 개혁이 되도록 하고 구조개혁적 기회가 되어야 함.
- 프랑스 파리에서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도 1968년 혁명 이후에 촉발되어 실현되었음. 한국에서도 촛불시민혁명이 단지 정치적 반대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현실과 교육현실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음. 현존 교육체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은 불만과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존재하고 있음.
-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차별 없이 하면서 균등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본다면,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사회적 신분과 직업과 임금의 서열이 존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대학체제의 내적 합리성과 평등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할 수도 있음. 그러기에 대학서열체제 해소 방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학체제의 합리적 발전방안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체제를 매개로 시간적으로 양쪽에 놓인 초중등교육과 직업영역의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매개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음.

2. 제안이 추구하는 목표

- **대학 서열화 구도 완화를 통한 입시경쟁 해소:** 중등교육의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 자체적 개혁으로 완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은 대학의 서열화 구도를 완화하여 과도한 입시경쟁으로부터의 탈피와 이를 통한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임. 다시 표현하면, 학벌사회해소-대학서열해소-입시해소의 3대 해소의 동시적 추진이라는 큰 목적 하에 구상된 것임.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된 대학의 민영화, 영리화, 시장화의 파괴적 결과를 완화하고, 대학이 ‘사적 재화’가 아니라 보편적 교육을 위한 ‘공적 재화’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임.
-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와 그를 통한 재정합리화의 모델 실현:**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은 통합국립대학들 간, 지역 중심 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들 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대학모델을 만드는 것을 지향. 1차적으로 통합국립대학 간에, 2차적으로 권역별 통합국립대학-지역중심 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 간에, 3차적으로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나아가 독립형 사립대학 간에 네트워크형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가 실현되는데, 그 공유수준이 다를 뿐이며, 궁극적으로 통합네트워크 내에서 이러한 공유의 수준을 높여가야 함.

3. 대학체제 개혁의 기본방향

수직적 서열화를 넘어 수평적 다양화로

- 대학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성은 현재의 ‘수직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성단위들--개인, 집단, 조직, 지역, 계급계층 등-이 하나의 기준에 따라 수직적으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들이 인정되고 자유로운 계층이동이 이루어져서 현재 일부 집단만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지향함.

일정한 수준에서의 미래지향적인 대학평준화의 시도

- 대학 공유네트워크는 전면적인 대학평준화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대학평준화의 의미를 갖고 있음. 궁극적으로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학과, 가능하다면 독립형 사립대까지도 아우르는 평등한 고등교육체제를 지향하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평적 공공적 고등교육체제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음. 학문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의 경우 원할 경우 누구나 평등한 대학에 순수한 학문적 열정을 갖고 진학하여 국가의 지원 속에서 공공적인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직업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무런 차별이나 불평등없이 공공적 직접 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음. 물론 이러한 대학진학 또는 진로직업 매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학간, 전공간, 그리고 직업간 서열과 차등이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기에 일정한 직업적 평준화가 필요한 것임. 지금처럼 학력과 학벌이 직업적 위상을 결정하고, 역으로 산업적 서열이 학력을 줄 세우기 하는 상황, 즉, 산업과 대학이 동시에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에서는 학력, 학벌을 중심으로 한 서열화, 대학서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초중등교육의 입시교육으로서의 비정상화 탈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 현재와 같은 대학의 단일 서열체제를 개혁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각 지역별 국공립과 사립대학이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대학 네트워크 구축. 기초학문의 측면에

서는 국립대학이 강점을 갖고, 실용학문의 측면에서는 사립대학이 강점을 가지며, 지역별로도 특성화된 강점을 갖도록 국가의 지원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별화 함. 모든 학과·학문·전공에서 서열화를 제약함. 국공립대학 내부에서도 소속 국립대학들 간에 집중육성분야(주력분야)를 갖도록 하여, 국가의 지원정책도 이를 반영 함.

- 현재 개별화되어 있는 거점국립대학을 통합하는 재구조화과정에서 국립대학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는 공공적인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함.
- 현재의 다양한 사립대학 중에서 독자생존이 어려운 사립대학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립대학들이 공영형 사립대학(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함. 이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으로서의 역사성과 전통을 존중하되 개방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적 운영을 하는 것을 의미 함. 공영형 사립대학이 정착하는 경우 사립대학은 공영형과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유형적 분화를 이룰 것임.
- 궁극적으로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아우르는 대학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공통 교양과정, 학사관리, 학교운영 등의 체제를 갖추게 됨.

4. 대학 공유네트워크의 기본구조와 단계별 발전방향

[대학 공유네트워크의 3가지 차원]

단계	범주	대상	공유 모델의 3차원	사례
1 단계	전국	거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10개 거점 국립대학들 간의 제도적 통합, 통합된 틀 내에서의 자율성(통합은 '단일'과는 다르다. 즉 10개 국립대학이 하나의 단일국립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앞의 제1유형으로 되는 경우에도, '서울대 폐지'는 아니다).
2 단계	권역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공영형사립대	연합 네트워크	권역별로 통합국립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들, 공영형 사립대학들 간의 인적·물적 공유와 협력
3 단계	권역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공영형 사립대 +독립형 사립대	일반 네트워크	권역별로 통합국립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들,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물론, 독립형 사립대학들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형 협력

서울시교육청은 △1단계: 통합국립대학 구축 △2단계: 통합국립대학-지역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간의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 구축 △3단계: 통합형-연합형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등의 단계적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통합국립대학의 구축

- 서울대(법인화 폐지)를 포함하여 10개의 거점 국립대학(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을 포괄하는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제1유형과, 서울대(법인 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제2유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통합국립대학은 통합성을 갖기 때문에, 소속 대학들 간에 특성화된 학문 영역을 갖도록 할 수 있고, 국가의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음.
- 특성화 영역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학에는 대대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통합국립대학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 통합국립대학은 공통의 학위를 받음.
 - 교수와 학생의 자유이동, 학점 상호인정, 정교수 승진 전에 순환근무를 의무화.
 - 통합국립대학의 선발 방식은 '단일한 대학명에 의한 지역별 선발'임.
 - 통합국립대학 내에서 1년 동안의 공통교양과정을 운영함.
 - 입학 후 통합국립대학 내 소속대학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허용.
 - 통합국립대학 내의 동일학과 및 전공 간의 통합적 운영과 협력체제를 구축함.
 - 소속대학별 별도의 의사결정체제와 동시에 통합국립대학 차원의 의사결정체제

2단계: 통합국립대-지역국립대-공영형 사립대학간의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 구축

- 1단계의 개혁 작업에서 동시에 공영형 사립대학을 확대해 나감. 2단계에서는 그 기초 위에서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간의 '대학 연합네트워크'를 구축함.
-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사립대학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을 말하는데, 사립대학으로서의 역사성과 전통을 존중하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에 상응하여, 대학 운영에서 국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는 대학을 의미함. 공영형 사립대학이 정착하는 경우 사립대학은 공영형과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유형이 분화될 것임.
- 통합국립대학에 속한 대학이 각 지역별로 거점대학이 되도록 하여 일종의 '공유의 플랫폼'이 되도록 함. 이를 통해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 간의 권역별 협력체제

가 작동하도록 함. 이는 ‘통합’과 구별되는 ‘연합’ 네트워크로 규정할 수 있음.

- 2단계에서는 국립대학의 기초학문 경쟁력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에 실용학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원정책을 분화시켜 감. 2단계의 대학통합네트워크에는 통합 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외에도 다양한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도 참여하도록 함.

3단계: 대학 공유네트워크

- 2단계 대학네트워크를 독립(형)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로 확장·재구성함.
-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독립(형)사립대학 간 권역별 협력체제가 작동하도록 함.
- 네트워크화 된 대학들 간에 공통교양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학점·학생·교수 등 교육 및 학교 운영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상호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출처>

서울시 교육청 3월 15일(수) 보도자료:

통합국립대, 공영형사립대로 이뤄지는 대학 공유네트워크 제안

5. 단계별 주요 고려 사항

[국립대학의 유형들]

유형	사례
거점국립대학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인천대
지역 중심 국립대학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안동대, 한경대, 한밭대
특수목적 국립대학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금오공과대, 방송통신대학, 한국체육대, 한국교원대, 방송통신대, 한국예술종합대, 한국전통문화대
교육대학(10개)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1단계

- 제 1유형의 경우 서울대가 법인화된 상태에 있다는 점이 난점으로 제기됨. 그러나 서울대가 완전한 민간 법인이 아니라 국가설립 법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국립대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동의만 존재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임. 1유형으로 간다면, 서울대 법인화는 취소되어야 할 것임.
- 제 2 유형은 서울대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광역시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국립대학을 만드는 것. 이 경우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국립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을 신설하거나, 원하는 경우 한 사립대학을 국립화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국립대학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임.
- 통합국립대학 내에서 거점 국립대학들 간의 특성화 분야 혹은 주력분야를 분화시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국립대학의 통합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주력분야의 분화를 촉진해야 하며, 국가재정지원의 방향도 이를 지향해야 함. 물론 권역별로 교육의 완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점 국립대학에는 고등교육의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음.
- 굳이 대학별 교양과정을 두지 않고 공통교양과정을 두자고 하는 것은, 대학이 갖고 있는 사회공공적 역할을 염두에 둘 때, 마치 준 의무교육과 같이 대학 단계에서도 학문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학문의 자세와 방향을 인도하기 위한 일종의 <전환기 학제>로 이해할 수 있음.

2단계

- 2단계에서 통합국립대학은 지역 중심 국립대학까지를 포함하는 대규모 국립대학 네트워크로 확장하게 됨. 물론 이 단계에서의 권역 내 국립대간, 그리고 공영형사립대간 서열 해소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크게 볼 때, 권역별 하나의 대학으로 작동하는 것을 지향할 때, 그 안의 대학별 격차와 서열이 존재할 경우 이는 다시 대입 입시 과정의 경쟁과정, 대학진학 후 전입경쟁과정으로 왜곡,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1단계에서 거점국립대학들 간의 통합대학이 만들어진 이후에,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거점 국립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지역의 국립대학들과 ‘권역별 국립대학 연합네

트위크'를 구성하는 과정이 2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럴 경우 지역 중심 국립대학은 거점 국립대학을 매개로 하면서, 통합국립대학 네트워크의 2차 구성 부분이 될 수 있음. 2단계에서 통합국립대학은 지역 국립대학(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안동대, 한경대, 한밭대)을 포함하는 확장된 네트워크가 됨.

※ 대학통합, 연합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고, 상당한 현실 역학적 조건에서 다양한 정책적 유인 도구와 국민적 동력을 뒷받침으로 하여 노력할 때 가능할 것임.

3단계

- 물론 일반 독립적인 사립대를 국가 공공 대학 네트워크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이상적인 것일 수 있음. 사립대가 스스로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견인 장치와 다양한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일부 유력 사립대들의 경우 마치 일부 자사고, 외고 등 고교체제로부터 이탈하여 독립적인 입시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교 유형의 경우처럼, 굳이 국가 고등교육체제에 편입되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은 없을 수 있음. 현재의 시장 본위의 고등교육 영역이 보다 큰 틀에서 사회화, 공공화되지 않는 이상(사학법 전면 개정 등), 거대한 패권 사립들(말하자면 경제영역에서의 재벌과 같은 위상을 가진)에 대한 공공적 통제와 운영은 쉽지 않은 일. 이를 하루 아침에 변혁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적 조건에서, 우선은 국공립대체제의 강화와 유력 사립대에 대응하는 경쟁력 확보, 그리고 영세 또는 위기의 사립대들이 능동적으로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공공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을 통해서 고등교육 영역을 공적 힘이 보다 우세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6.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관련 주요사항

통합국립대학

- 통합국립대학의 선발은 대학입시의 변화와도 연계되어야 함. 예컨대 내신 성적 10% 이내의 학생들로 입학자격을 제한하며, 국영수 등을 자격시험화 하고 1,2,3지망까지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통합국립대학은 '자격고사화 된 수능'과 고교 내신을 중심으로 선발하게 될 것임. 사실

현재 ‘논술시험’ 등 긍정적인 시험방식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사교육경쟁으로 왜곡되어 버리게 됨.

- 선발은 계열별로 선발할 수 있을 것임. 각 계열별로 고교 내신성적으로 선발된 학생(70%)과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자들(30%)로 함. 어느 국립대학(캠퍼스)에 입학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열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의 1,2,3지망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배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물론 여전히 대학서열해소가 우선될 것인지, 입시를 통한 학생균형 배정이 우선일지는 복잡한 문제로 남게 됨. 가령, 대학서열, 전공서열, 지역서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네트워크 또는 통합이라면 네트워크 또는 통합대학 안에서도 지역별 선호(당연히 서울과 수도권), 또한 특성화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는 전공으로의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균형배정이라는 원칙과 충돌하게 될 우려도 있음. 이를 해소하는 정교한 설계안이 필요함. 이상적으로는 서열해소 된, 즉 상향평준화된 대학체제에서 학문을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추첨 등을 통해서 원하는 학교에, 전공에 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학문은 국립대학에서, 응용학문은 사립대학에서 맡는 거시적 분업 구조를 지향.
- 전공 진학은 전공별 필수 이수과목과 교양과정 선택 이수과목의 성적을 중심으로 하며, 영어와 수학 등 도구과목의 자격시험 통과 여부도 고려할 수 있음. 원하는 전공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전공의 이수를 가능하게 함.
- 통합국립대학은 중층적인 지배구조를 갖는다. 즉 소속대학별로 의사결정체계를 갖는 반면에, 전체 통합국립대학들을 포괄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통합네트워크 수준의 가칭 ‘통합이사회’와 대학별 ‘평의회’를 둬.
- 통합국립대학 내의 교수들은 상호이동을 자유롭게 하되, 정년보장을 받기 전에(이른바 tenure을 받기 전에) 한번은(혹은 일정한 회수만큼) 소속대학을 바꾸어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함.
- 국공립대 통합대학 내에서는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함.
- 통합국립대학 내에서의 ‘제한된 서열화’가 중단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임.

그렇지만 기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뛰어넘는 큰 틀에서의 국립대학 통합과정이며, 기존의 서열화는 크게 완화될 것임. 심지어 1968년 혁명 이후 70년대 이후 파리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내부에서 서열이 존재함. 그러나 한국에서 통합국립대학이 어느 정도의 평준화적 성격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형성과정, 그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

공영형 사립대학

-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제공받는 반면, 인사 및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구성원 및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짐. 공영형 사립대학도 이른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지역에 기반한 직업대학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 대학(community college)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이사회에 지역인사들이 다수 참여해야 할 것임.
- 학교법인은 공익이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식으로 개편함. 이사회에는 지역인사들이 참여하게 됨.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창립자와 창립정신이 계승되도록 하는 명예가 있도록 하되, 운영 자체는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 공영형 사립대학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의 예시는 서울교육청에서 임재홍 교수 등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프로젝트에 의해 제시된 법안을 별첨과 같이 예시로 제시함.
- 대학구조조정을 해서 대학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마당에 한계사학을 살리면 여전히 과잉이 되지 않는가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OECE기준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학의 통합운영을 하는 경우 입학정원은 일정하게 축소하더라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낮아진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것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임.
- 공영형 사립대학은 권역별로 학생들을 공동선발 한다. 예를 들어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들을 공동선발 한다.
- 권역별로 전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교수 인사는 정년 보장을 받기 전에 한번은 통

합 공영형 사립대학 내의 타 소속대학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 공영형 사립대학은 대학진학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주변’ 사립대학들의 정원축소를 하려는 교육부의 정책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구조개편, 사립대학의 공공적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임. 현재 ‘한계 사학’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들이 공영형으로 개편하고 권역별 통합운동을 하는 것을 지향함.
- 앞으로 한국사회가 복지사회로 이행하게 되면서 고등교육의 무상의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음. 그러한 무상교육 영역의 확장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확대와 함께 가야 함. 본안은, 향후 국고지원처럼 공공적 자원이 민간부문에 투자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 네트워크형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을 지향.
- 대학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학운동을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과 국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폭넓게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출구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대학 자산의 10%(비율은 별도의 논의 가능할 것임)를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컨대 공영형 사립대학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 자산의 10%를 장학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있다고 생각됨. 특별법을 통해서 사학소유자들이 대학 운영 포기를 가능하게 하는 경로를 열어주고, 대학 자체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운영하도록 함.

※ 공영형 사립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예시 주요 사항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가칭) 주요 내용

제2장 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집행

제3조(구조개선계획의 제출) 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고등교육기관은 언제든지 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사립고등교육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립대학법인의 권리·의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2.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관한 계획
3. 국·공립고등교육기관과의 통합 계획

제3장 공영형 사립대학

제7조(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을 신청한 사립대학 법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수회 등이 추천하는 자, 교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교원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자
2. 학생의 과반수로 조직된 학생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자, 학생의 과반수로 조직된 학생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자
3.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직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회 등이 추천하는 자,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직원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자
4. 대학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5.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제9조(해산명령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교육부장관은 사립고등교육기관의 법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립대학법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사립대학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사립학교법」 제 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는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에 한한다.
- ③ 국가는 「사립학교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 교육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사립대학법인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의 문제점

- 세계관, 교육철학, 현실진단의 측면 -

우리 사회에는 교육에 대해서 대중의 비합리적인 정서에 영합하는 교육철학이 유행이다. 이것은 경쟁과 평등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며 과도한 정부개입, 선택권 제한, 사적 재산권

침해, 사교육 말살 정책, 학력차별금지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문제는 현재의 일시적 편의와 잘못된 판단 때문에 미래를 망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고는 얼핏 현재의 문제에 대안을 주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성의 것을 부정한다는 획일성을 착각한 것에 불과하다.

‘대학입학 보장제’와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이하, 제안)은 80년대의 계급 투쟁론적 세계관을 우리 교육에 투사한 결과이다. 이것은 ‘자사고 vs 혁신학교와 일반고 구도’의 대학 버전이며, 대학평준화를 의도로 기획된 설계주의자의 정책 구상일 뿐이다. 또한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우민화 정책이며 청년 실업을 유발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아이들 소꿉놀이 같은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구상을 실험하기 위해 대규모 국고지원과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며 ‘도덕적 해이’이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켜야 하는 부모세대의 책무를 방기하여 제2의 ‘이해찬 세대’를 양산하는 구상이다.

이하에서 경쟁과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대학입학 보장제’와 ‘대학상생 네트워크’ 제안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경쟁에 대한 오해

소비자로서 생산자들의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신이 경쟁의 참가자가 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은 개인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사회 전체로는 인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있기 마련이고, 경쟁에 따른 비용도 지불되어야 한다.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은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알아가고 이에 걸맞은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자신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이다.

교육생산자인 대학도 선택을 받으려는 경쟁과정을 통해 진화하며 연구능력과 교육의 질도 상승한다. 이런 대학들을 정부지원을 미끼로 상생네트에 가입시켜 평준화시키려는 시도는 경쟁의 순기능을 애써 무시하고 질 좋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 평준화되어 발전의 동기를 상실한 대학의 질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미신이다.

평등에 대한 오해

우리 사회는 아직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차별(discrimination)이란 '키, 인종, 성별, 출신지역'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을 기준으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차이(difference)란 '실력, 소질, 적성, 노력' 등 개인에 의해 변경 가능한 '다름'을 뜻한다. '공정(公正)함'이란 이런 '다름'에 따른 프리미엄을 인정하되 기회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차별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고 “차별 금지”는 대중적 인기가 있는 구호이다. 그래서 인간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차별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질투에 근거한 남의 성공을 배 아파하는 정서일 뿐이며 결국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려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된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곳이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다. 노력과 적성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싹틀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차별 철폐와 결과의 평등을 내세운 유토피아는 다른 종류의 차별을 만들었고, 인간의 자유와 삶의 질을 압살하는 지옥으로 변했다. 반면 인간능력의 한계와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정착시켜 온 사회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선진화된 사회로 발전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선택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입시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습능력이 돈에 비례한다는 편협한 사고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게 되는 요소에는 지적호기심, 목표의식, 의지, 인내심, 집중력 등이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요소들을 애써 외면하며 불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후진국에 태어났다면 지금의 혜택을 누리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제의 근원을 사교육으로 호도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 논의는 좋은 교육에 대한 것보다는 사교육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것은 교육 문제의 근원을 사교육으로 잘못 전가하는 포퓰리즘적 사고이며 교육혁명가들에게 선동당한 대중의 인민재판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문제를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대중, 자신들의 무능과 실책을 감추고 권한확대에만 관심 있는 교육관료, 자신들의 불성실을 공공성이라는 위선으로 덮으려는 교사, 좌경화된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한다.

교육에 있어 불평등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 차에 따른 지역 격차와 사교육 접근성의 격차이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게 되는 요인이 좋은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교육특구도 머리 좋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고, 일찍부터 학습에 노출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평균 학력이 높은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과도한 평등논리에 따라 수능 시험이 쉬어진 것도 한 몫을 한다. 오히려 이럴수록 학교운영권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선택권을 소비자에 돌려주어 경쟁이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각 지역에 입시에 강한 학교가 생겨나고 좋은 사교육이 그 지역에 진출할 요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사교육도 치열한 경쟁의 효과로 가격대비 서비스가 좋아졌으며 절대 가격도 하락했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저렴한거나 무료인 인프라도 충분하다. 일례로 질 좋은 인터넷강의도 전 과목을 1년 동안 30만원 정도에 수강할 수 있다. 오히려 내신과 쉬운 입시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지식전달형 사교육’ 보다 학생의 모든 시간과 학습관리까지 통째로 맡기는 ‘관리형 사교육’이 일상화된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오는 주된 이유이다.

이것은 사교육이 흔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는 학교나 부모의 역할인 학습 및 생활관리를 사교육이라는 용역을 구입하여 대신 해결하려는 태도이다. 사실 요즘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격차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식으로 사교육 탓을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건강부회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 고2까지 교과과정을 마치고 고3은 입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수생도 줄고 선행을 위한 사교육도 줄어들 것이다.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과도한 정부개입

흔히들 대학의 서열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여러 상품이 있을 때 품질에 관한 서열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돕는 중요한 정보이다. 서열은 브랜드 가치의 수직적 위계화이며 브랜드 가치는 오랫동안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시킨 기업의 자산이다.

제안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에 별을 주고 국고 지원을 통해 무임승차

하려는 나태함에 상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대학들의 무형자산을 시장의 룰을 인위적으로 바꿔 강탈하려는 개입주의 정책이다. 제안의 골격은 최근에 교육시민단체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모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상생시민단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국고 지원, 후원, 연구용역 수주 등에서 평등하게 분배하고자 하면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다.

제안은 대학서열이 취업에서 차별을 가져오므로 대학서열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의식의 연장선에 최근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블라인드 채용’이 위치한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서 출신학교 편중현상이 해소될지 의문이다. “SKY 대학이라 뽑은 것이 아니라 뽑아보니 SKY 출신이더라”라는 회자되는 대기업 입사관계자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소 극단적이지만 이런 의식구조에서는 ‘대학입학보장제’와 ‘상생대학 네트워크’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취업보장제’와 ‘상생기업 네트워크’ 공약이 나올 수 있다. 내용은 취업희망자를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시켜 주는 것이며 불평등해소를 위해 회사 간 동일 직종에 동일 임금제, 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공영형 기업화’가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

제안에서 ‘상생리그’에 가입한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불린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고지원을 50% 받는 대신 인사 및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구성원 및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학교법인은 공익이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며 이사회에는 지역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설립자가 그 운영을 관장하는 사적 존재를 그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의사결정기구에 포함시켜 공적 존재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립대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공영화해서 권력의 통제하에 두려는 발상이다.

위의 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고, 제안은 ‘공영형 사립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예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3장 공영형 사립대학

제9조(해산명령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교육부장관은 사립고등교육기관의 법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립대학법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 해산과 관련된 조항들(제34조, 제35조, 제47조, 제47조의2)에 비해 강화된 내용으로 ‘공영형 사립대’ 안의 취지에 비춰보아도 무리한 독소조항이라 판단된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교육부의 학교 통제 권한을 키우려 한다는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다.

Ⅲ. 실행 결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 ‘자사고 vs 혁신학교와 일반고’ 구도의 대학 버전 -

선발이 없이 모든 지원자를 입학 허가하는 네트워크 가입대학들은 발전에 대한 동기를 상실해 필연적으로 슬럼화 될 것이다. 독립형 사립대(이하, 독립리그)와 네트워크 가입대학(이하, 상생리그)로 이원화 되면서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각각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로 인식이 정착될 것이다. 시행초반엔 제일 서열이 높은 학교에 추천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정착되는 시기에는 상생리그의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보편화 될 것이다. 따라서 독립리그 진학이 불가능할 경우의 차선택 정도로 인식될 것이다.

고3 후반기에 독립리그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사교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고2 때까지는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대부분의 부모는 의무감 때문에 미리 포기하기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사교육 기관에서 학생의 가능성을 과대 포장해서 사교육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독립리그를 대비하는 경쟁과 사교육은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폐단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생리그의 간판 역할로 사립 명문대학의 가입이 필요한데 일단 SKY 대학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아래 서열의 사립대학 중 현재 우수학생 모집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경우, 브랜드 구축에 투자한 돈과 노력이 의미 없어지며 마이너리그로 취급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공영화되었을 때, 운영권에 심대한 간섭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 심지어 상생대학 네트워크 안은 기초학문은 국립대 중심이고, 사립대는 응용학문 위주로 재편할 계획을 담고 있어 기초학문 역량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명문 사립대는 국고지원을 포기하고 자력으로 독립리그에 남는 것을 택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서열에서 무력감을 느껴 경쟁보다 국고 지원에 의존하려는 무임승차 태도

를 보이는 사립대들이 생겨날 것이다. 한 사립대의 참여는 그 이하 랭킹 대학들을 대부분 상생리그에 참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결국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는 여부가 상생리그의 규모와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명문 사립대를 상생리그로 가입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1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 국립대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립대 슬럼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학자격 요건을 상위 10%로 제한하고 학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고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국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별로 특성화된 학문 영역을 갖게 하고 국가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의 학업능력은 대학의 학문역량과 직결된다. 만일 우수 학생들이 통합국립대에 대해 불확실한 전망을 가질 경우 지원을 꺼릴 것이고 이 경우 대규모 국고 지원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또한 이 경우 각 국립대별로 특성화 대상이 아닌 학과와 그 연관 학과가 슬럼화 된다. A대학의 B학과가 특성화 대상인 경우 지금은 성적에 의한 지원이므로 수긍하지만,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라 B학과 희망자는 누구나 A대학 배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승복하기 어렵다. 결국 리그활성화를 위해 정원을 늘려 희망자 모두를 A대학에 배정하게 되고 타 대학의 B학과는 슬럼화 된다.

1년의 공통 교양과정 후 전공 선택하게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 경우 학과 선호도가 다르므로 선발과정이 필요하다. 제안에서는 전공 진학은 전공별 필수 이수과목과 교양과정 선택 이수과목의 성적을 중심으로 하며, 영어와 수학 등 도구과목의 자격시험 통과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를 위한 대학교과 사교육이 발생하여, 줄였던 고3 사교육이 단지 시기가 늦춰 발생하는 효과이다.

대학입학보장제가 실시되면 입학허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학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허용기준을 하향시키라는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기준은 실질적으로 수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대학은 하향 평준화되고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희망에 따라 배정되므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진학하게 된다. 이 결과 현재와 같은 과도한 진학률이 유지되고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 대학을 연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특정 인기학과에 지원이 몰리게 되고 2학년 전공 선택 때 선발을 한다고 해도 탈락자들은 유사학과에 주로 몰리게 된다. 이것은 이후 특정 직업군에 구직인력이 집중되어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아이들에게 무책임하게 희망고문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관해 현재 '반값 등록금'이 고학력 청년실업의 주요 근원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IV. 프랑스의 입시와 현실

프랑스의 입시제도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의 세 계열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등학교가 일반계와 기술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고등학교 계열 선택은 일반계·기술계 고등학교 또는 직업계 고등학교로 양분된다. 고등학교는 모두 3년 과정이며, 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시험을 거쳐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다. 학생이 진학하는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응시하는 바칼로레아 계열(일반, 기술, 직업 바칼로레아로 구분)도 상이하다. 사실상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계열별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학생을 선발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체제로 구분된다. 대학과 비대학 부문이다. 대학(université)은 개방 입학정책을 취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원칙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지원자는 모두 수용한다. 예외적으로 기술대학(instituts universitaires de technologie: IUT), 통합 준비과정(classes préparatoires intégrées)은 학생을 선발한다. 비대학 부문은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대표적으로 그랑제꼴(grandes écoles)과 그랑제꼴 입학을 준비하는 2~3년 과정의 준비학교(classe préparatoire aux grandes écoles: CPGE)가 이에 속한다.

프랑스에서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칼로레아를 취득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입학 기준은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학 요건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을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생 선발(절차)이 없는 과정이다. 대학들이 이에 속하며 프랑스 대학은 모두 국립이다. 프랑스 전역에 85개의 국립대학이 있으며 파리에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있다. 소르본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은 파리 4대학이다. 프랑스 대학에는 입학 정원이 없으며, 매년 바칼로레아 합격률을 토대로 교육부에서 대학 정원을 결정한다. 바칼로레아 합격자는 누구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 체제와 달리 하나 또는 소수의 단과대학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에 따라 특화된 전공 분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전공에 따라 한정되어 있다.

대학에서의 학년 진급은 매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전공에서 2회 이상

유급을 할 경우 전공을 변경해야 한다. 법학과와 같이 유급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경우(입학정원이 많으나 졸업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학생이 스스로 전과를 하기도 하며, 매 학년도 말 유급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둘째, 학생의 지원서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내신, 교사추천서, 지원동기 등 서류 전형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그랑제꼴 준비학교, 고등 기술과정(sections de techniciens supérieurs: STS), 기술대학(IUT), 단기전문대학(instituts universitaires professionnalisés: IUP), 교사양성고등교육기관(Ecoles Supérieures du Professorat et de l'éducation: ESPE) 등이 있다.

셋째, 경쟁시험(concours)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그랑제꼴을 들 수 있다. 그랑제꼴은 프랑스 고등교육제도의 핵심이자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랑제꼴은 학생들에게 높은 지적 기준을 요구하며, 학생과 교수 간 동료관계, 토론식 수업, 외국어 교육 등을 강조한다(Barlow & Nadeau, 2003: 188). 그랑제꼴은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데, 법학, 의학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그랑제꼴이 있거나 그랑제꼴에 준하는 사회적 명망을 가진 학교들이 있다. 취업과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들 학교의 입학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능력(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류 전형이나 경쟁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교육기관, 예를 들어 그랑제꼴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명망있는 그랑제꼴 준비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그랑제꼴 준비학교에서 그랑제꼴에 진학할 경우에도 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분야별로 그랑제꼴의 서열이 있으며, 이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실력, 성적으로 어느 수준의 그랑제꼴에 진학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프랑스는 중등교육 대중화와 더불어 바칼로레아 합격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자격시험으로서 바칼로레아의 의의, 학생 선별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80%에 이르자 바칼로레아 학위를 그저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김정빈, 2012). 또한 기술 바칼로레아나 직업 바칼로레아 취득자 중 취업보다 고등교육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기술 바칼로레아 합격자들의 80%가 단기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어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서 바칼로레아의 의의가 약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L'express, 2013.7.12.). 1980년대 이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해온 바칼로레아 합격률 제고 정책이 바칼로레아의 성격, 목적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프랑스 고등교육은, 평준화된 대학교육을 내세우면서도 가장 엘리트 중심적이며(이병애, 2004), 다양한 계층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불평등한 사회’(New York Times, 2002.4.27), ‘그랑제콜 중심의 엘리트 사회’(New York Times, 2010.7.1)를 유지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초·중등학교 교육은 엄격한 점수제를 통해 그랑제콜 준비학교를 거쳐 그랑제콜에 진학하는 사회 각 층의 소수의 엘리트를 선별하는 거대한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프랑스 교육제도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인용 출처>

‘2016 프랑스의 대학입시제도 분석 및 시사점’ : 박 상완 부산 교육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프랑스 대학의 현재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대중적인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국립대학교’와 각 분야의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집중적으로 함양하게 하여 전문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랑제콜’로 이원화 되어 있다.

점점 더 많아지는 바칼로레아 합격자들을 대학은 수용해야만 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제도 때문에 일부 대학에는 적정 수준 이상의 학생이 몰리고 있다. 1969년 이후, 여러 단과대학이 종합대학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학의 인구증대는 학생들의 질적 격차를 초래하였고, 결국 유급생이 늘어나 또 다른 교육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학은 학생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시설 및 재정부족으로 인해, 갈수록 대학이 안고 있는 교육 환경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가중되는 느낌을 준다. 명성이 높은 소르본느 대학 역시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위용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건물 내부의 현실은 실망감을 준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뻥뻥하고 복도와 계단에선 다음 강의 시간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자질이 떨어져, 현재의 학사학위 수준은 바칼로레아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저하되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받게 될 급여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대학 입학 후 1~2년 사이에 탈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 반면에, 그랑제콜 출신자들은 산업, 경제, 공직 각 분야에서 많은 책임과 권리가 부여된 중요한 직책이 보장되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급여 서열에 있어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랑제꼴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얻는데 더 유리하다. 현재 프랑스 사회에서 고급간부, 전문엔지니어, 자유직 종사자는 그랑제꼴 출신들이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인용 출처>

‘이원화된 프랑스의 대학 체계’ 김진환.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5집

V. 맺는 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미래는 육체노동, 정신노동 모두 반복적 업무는 줄어들고 비반복적 업무가 살아남는 시대이다. 현재 없는 직업을 발굴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용적 학습에서 창조적 학습으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주입식 보다는 학생의 능력을 이끌어 내는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스스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이 지식소비자가 아닌 지식의 생산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사회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교육이 바뀌면 사회도 바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소한의 관리에 그치고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국가 주도의 교육 패러다임을 버리고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학교의 운영권과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선택권과 학교 운영권

학교 선택권과 학교 운영의 자유는 꼭 개인의 행복 추구나 사적 재산권 보호와 같은 가치 때문에 강조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가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질 좋은 학교들이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들이 교육 생산자로서 노력할 동기가 부여되고 경쟁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교육을 민간이 주도할 경우 다양한 교육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가 출현할 것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소질과 기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교도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출산률 감소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노력도 가속화될 것이며 학교와 교원도 경쟁 무풍지대, 철밥통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경쟁은 참가자에게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질 좋은 교육이 제공되는 교육 강국으로 가는 길은 교육의 자율화가 정답이다. 학교간의 경쟁이 이뤄지고 그 노력에 의한 차이가 소비자에 의해 판정되지 않는 한 교육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 없다. 학교는 본질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교는 경쟁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교육의 정부주도는 획일적인 선발방법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는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선발을 할 수 없다. 학교의 신입생 선발권이 자율화되면 각 학교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차별화된 선발기준을 만들 것이며, 소양이 각각 다른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커질 것이다.

입시가 바로서야 한다.

현재 내신과 수능은 학생선발의 방식으로써 타당성을 상실한 상태다. 학교 간에 실력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한 내신, 학생의 문제 해결력을 풀이과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결과로만 판단하는 수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내신은 학생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정성(定性)적 정보로 국한시키고 수능은 자격 고사화 해야 한다. 오히려 내신과 수능이 사교육 증가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귀 기울여 봐야 한다.

실질적인 합격 여부는 서술형 평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객관식이 서술형보다 공정하며 객관적이라는 것은 편견이다. 찍어서 맞추는 요행이 많이 좌우되며 유사답안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고득점의 요인이 된다. 암기형 주입식과 같은 수용적 학습이 유리한 시험이므로 수용적 학습이 일상화 된다. 이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풀이와 관리 위주의 사교육이 늘어나게 된다. 이제는 집어넣은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보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술형 평가가 필요하며 공정성은 절차를 잘 설계해서 확보할 수 있다. 대학별 지필 본고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학 통제와 사학법인 무력화 시도

박 주 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1. 들어가며

사립학교에 빗장을 걸어 두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회엔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지방교육청 곳곳에선 사학 운영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일부 교육단체들은 국회와 교육청과 공조하며 그들 식의 사립학교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 전후로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집단들은 대놓고 ‘사학 손보기’를 교육개혁 우선 과제라 외치는 형국이다.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사학은 마땅히 엄벌해야 하나, 사학 전체를 마치 잠재적 범죄집단인양 매도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사립학교나 사학법인 모두를 마치 적폐집단으로 몰아가는 걸까. 그 속내는 “국가 보조를 받는 ‘사립학교를 공영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는 데에 함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사립대학 공영화 정책도 ‘교육기관의 공영화’와 궤를 같이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사학 통제와 사학법인 무력화 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들의 계획을 들여다보자.

2. 사학 통제 시도

(1) 사립학교 교사 채용 권한 박탈

- 좌파성향 교육계는 사학 비리와 부패의 원인을 학교법인의 권한 독점으로 인식.
- 사학으로부터 인사권을 박탈하고 교육청이 권한 행사.
- 사립학교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제도가 이미 도입돼 운영 중.
(교육청) 임용 시험 위탁 권장 조례 또는 교육청-학교법인 MOU 통해 위탁 전형 실시¹⁾.

1) 하지만, 위탁 임용시험에 사립학교 참여율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립학교 교장은 “실력있는 교사를 뽑기 위해 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 전북, 대전, 광주에서 ‘사립 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 조례’ 제정
 : 서울교육청²⁾은 2016학년도부터 공립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사립학교에도 동시에 지원하는 '공·사립 동시지원제' 시행.

(국회) 이상민의원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2016.7) 계류 중.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교장이 아닌 교원)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함.

<이상민의원 법안 제안이유>

해당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라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사학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나고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사립학교 징계위/인사위에 개입

- 내부고발자에게는 보복성 징계, 비리협조자에게는 제 식구 감싸기 등 사학들이 징계위원회를 남용 및 악용 한다고 비판.
- 2007년 노무현 정권, 교육부는 징계위 외부인사 1/3 이상 위촉하는 방안 추진.
- 2016년 징계위원회에서 법인이사가 전체 위원의 1/2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위원 최소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사학법이 개정³⁾.
- (국회) 김상희의원이 사학법 개정안(2014.5) 발의, 임기만료 폐기.

: 관할청이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관할

면 오히려 사립학교 자체에서 뽑는 것이 더 경쟁력 있을 것”이라면서 “또 학교의 건학이념이기도 한 종교적 신념을 배제하고 선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위탁 전형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쓴 소리를 했다.<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06426>

2)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에 도입해 올해까지 6번째 위탁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서울시내 366개 사립학교 중 2016년도 위탁채용 참여 학교는 12곳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다.

3)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청에 보고하게 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시 해당 학교법인의 ‘교원 또는 이사’ 위원 수가 전체의 1/2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여전히 징계위 구성을 변경하려는 주장들이 난무.

: 법인·시민단체·교육청이 추천하는 인사 1/3씩 구성, 교육청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 교육청에 위탁해 사학 징계권 회수.

- 각급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을 모두 정관으로 정하도록⁴⁾ 한 것을 두고 인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며 비판. 교육청 공무원 등이 인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것과 인사위원회 조직, 기능, 운영, 심의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
-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당해 학교 구성원의 다수가 인정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2014.10)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경기도의회를 통과한(2013.3)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에는 사립학교 교원 인사위원회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3) 교육감에 사학 행정지도권 부여/지원 빌미로 사학통제

- 서울시의회가 발의한(2014.10)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2013.3)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에는 교육감에게 사학을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경기도교육청은 사학지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사립학교 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 교육청이 외부 인사를 통해 사학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마련했다는 비판 제기.
- 의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되긴 했으나,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 원안에는 ‘교육감은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령이나 교육감이 정한 지침을 위반한 사학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안>

제5조(사학지원협의회) ① 본청의 사학담당부서와 사업부서는 교육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학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본청의 사학담당부서나 사업부서의 제안으로 구성되며, 관련 부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사립학교에서의 교육정책사업 추진 계획을 사전 협의하거나, 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4)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사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 운영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학담당부서에서는 사립학교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6조(행정 지도)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운영, 재산 관리, 인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 지도를 실시한다.

- ② 교육감은 교비회계의 횡령이나 회계부정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을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법인회계의 횡령 또는 회계부정, 이사회의 불법 운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내용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 ④ 사학담당부서는 정기적인 행정 지도의 결과를 사학기관에 통보하고, 사학기관 운영 정책에 반영한다.

(4) 사립학교의 공영형 운영 시도

- 사학법인 이사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것을 촉구해 옴.
-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비율만큼 이사회에서 공영형 이사를 선임하자고 주장.
: 국민 세금이 들어간 만큼 ‘학교운영 및 징계’ 등에 교육당국이 함께 운영하고 책임지는 태도 필요(공영형 사학으로 탈바꿈)하다는 논리를 펼침.
- 또는 법정전입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법인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불하는 비율에 맞게 이사 추천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하자고 주장.
- 비리 사학, 영세 사학은 궁극적으로 ‘공립화’해서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비율을 축소해 나가려는 전략.

(5) 부당징계 구상권 청구/임원 손해배상 청구

- 부당한 징계가 끊이지 않고 반복, 남발되고 있다며 비판. 부당징계, 보복징계에 대한 관할 교육당국의 구상권 청구법안을 민변이 추진 중.
- 부당징계에 참여한 자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금 청구하자는 주장.
- (국회) 박영선의원(사학법 개정안(2012.8) 발의, 임기만료 폐기).
: 현행 사학법 제27조는 민법 규정을 준용하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민법」제65조)을 지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민법준용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사실상의 임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려는 내용.

(6)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약화

-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에 대한 결정적으로 심의권을 가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⁵⁾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지속.
-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히려 사학분쟁의 해결과 정상화에 방해가 된다면 조정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축소를 주장.
- (국회) 유은혜의원이 사학법 개정안(2012.6) 발의, 임기만료 폐기.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
- (국회) 김상희의원이 사학법 개정안(2012.9) 발의, 임기만료 폐기.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임시이사 선임->추천, 해임->해임건의, 심의결과 관할청 기속 삭제)하려는 내용.
- 지방교육의 특수성, 교육자치 살리기 위해 사학법인 관련 사안은 먼저 관할청 의견 들도록 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하자고 주장.
- 박주민 의원(미발의)은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자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준비.

(7) 시민감사관의 사학 감사

-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우리나라 현행 법제 하에서 감사업무의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용하여 감사를 강화하자고 주장.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민감사관을 임용해 일정 기간 단위학교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

5)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임시이사의 선임과 임시이사의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3. 사학 통제와 교육의 자유 제한

이처럼 좌파성향의 교육계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사학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시민단체-전교조-교육청-국회가 공조하며 그 일부분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

사학의 인사권/징계권을 약화시키고, 법인 이사회에 교육청이 추천하는 외부이사 비율을 높이고, 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행정지도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재정지원을 무기로 사학을 길들이려 한다. 비리사학의 임시이사 선임도 교육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학운위와 교사회 등을 움직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는 계획도 있는 듯하다. 마침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 활성화도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으며, 좌파들은 지방선거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좌파교육감 당선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들이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잃고 준공립화되어 있다. ‘사립학교다운 사립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 등이 있지만, 이마저도 새 정부나 좌파교육감들에 의해 존립이 위태롭다. 사학을 통제하려는 집단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학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더라도 사립학교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이는 공적 규제를 가장한 사학 무력화 시도일 뿐이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은 학교법인과 관련된 법률을 해석할 때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립학교의 특수성·자주성·공공성을 선언하고 있는데, 위 헌법 정신에 충실하자면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⁶⁾ 다시 말해, 사학의 자주성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며 그 자주성으로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만 최소한 제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한 조문이 자주성을 강조한 조문보다 배 이상 많다.⁷⁾

‘사학의 자유’는 사립학교나 사학법인만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사학이 각자 특색에 맞게 교육과정, 학사일정, 교과서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

6) 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7) 박민.이시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2011.

사립학교법을 공공성과 자주성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조한 조문이 37개인데 반하여 자주성을 강조한 조문은 15개에 불과하다.

는 것은 바로 국민의 ‘교육의 자유’와 연결된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응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사학의 자유인 것이다. 학교선택권과 교육선택권이라는 교육수요자의 권리도 사학의 자유 하에서 학교마다 특색과 차별성을 지녀야 그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학교의 차별성은 개별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에 적합한 유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더 나아가 교육 환경이나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등록금 책정권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사학 자유의 주체는 사립학교만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국민이다. 사학의 자유는 교육기본권이다. 사학의 통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다. 이미 교육과정의 획일화, 학교선택권 제한으로 우리는 교육의 자유를 제약 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검은 속내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고자 사학을 통제, 무력화하려는 집단의 움직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교육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지키기 운동이 절실하다.

<참고> 사학 통제하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구분	의원	법안 내용
18대	권영길 '08.12.15.	사립대학은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적립 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안민석 '10.7.28.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자문기구로 변경하고 심의결과가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함.
	김상희 '10.11.24.	사립대학이 예산편성 시 전년도에 추정된 결산과 그 밖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제재를 가함.
	김상희 '11.4.19.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임시이사 선임->추천, 해임->해임건의, 심의결과 관할청 기속 삭제)하고, 비리 등과 관련된 종전 재단인사촉 이사의 선임비율(1/3) 제한.
19대	유은혜 '12.6.27.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함.
	정진후 '12.6.27.	사립대학은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적립 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박영선 '12.8.2.	임원이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그 임원은 학교법인에 연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음. 위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한 것을 방조한 자에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
	유기홍 '12.9.4.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 시 과거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당사자나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함.
	김상희 '12.9.1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임시이사 선임->추천, 해임->해임건의, 심의결과 관할청 기속 삭제)하고, 비리 등과 관련된 종전 재단인사촉 이사의 선임비율(1/3) 제한.
	정진후 '13.6.28.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학사행정 위법행위를 방조한 때에도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국가·지자체가 지원의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권고하였는데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원중단, 지원금 회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학급의 감축·폐지 등의 조치할 수 있음.
	정진후 '13.6.28.	학교법인 이사장,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
	이상민 '13.7.15.	각급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
	유성엽 '13.8.13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받는 학교는 교원 신규채용 제1차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고, 임원·교원이 해임·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공개전형에 위탁 실시 의무화.

	김상희 '14.5.2.	관할청이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게 함. 징계위원회 구성시 해당 학교법인의 '교원 또는 이사' 위원수가 전체의 1/2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정진후 '14.7.24.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 사항의 의결정족수 강화(2/3),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 불가.
	도종환 '14.8.12.	회계부정 등 비리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확정된 자에 대해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 의무적 취소. 인사위원회에 교원과 외부전문가 참여를 규정.
	김상희 '14.8.14.	사립대학이 예산편성 시 전년도 추정된 결산과 그 밖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제재를 가함.
20대	이상민 '16.7.29.	각급학교의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이 필요한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
	박경미 '16.8.17.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를 이사선임에서 원천적으로 배제.
	윤소하 '17.3.20.	특정목적적립금이 전체 적립금 총액의 10%를 초과 못하도록 함. 적립금의 2분의 1의 한도에서 증권 취득을 허용한 조항을 삭제.
	도종환 '17.5.18.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대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자사고 폐지, 시대착오적 교육 역주행

오 세 목

자사고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

폐지 위기에 내몰린 자사고

-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등장한 진보 교육감들은 소위 공동공약 중의 하나로 “자사고⁸⁾ 폐지”를 내세웠고,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은 여기에 앞장섰다. 당선되자마자 다 끝났던 5년 주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자의적인 평가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13개 평가 대상 자사고 중 6개 학교를 지정 취소하자, 교육부는 이를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고 직권 취소하였고,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후, 서울 자사고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사전략은 지속되어 왔으며, 2015년도 운영성과 평가 학교 중 3개 자사고, 1개 외고에 대해 지정 취소를 시도하려다, 정작 지난 6월 28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해당 학교들이 모두 평가 기준을 통과해 취소는 불가함을 밝히고, 법령 개정을 통해 폐지시켜 달라고 공을 교육부로 넘겨 버렸다. 이는 온갖 문제점을 들먹이며 폐지에 앞장서 왔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며 또한, 자사고나 외고가 도입취지에 맞추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지역 교육감들이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 교육감은 다가오는 운영성과 평가 5년 주기를 이용해서 경기 지역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조희연 교육감은 폐지를 공언하면서도 교육부로 공을 넘기고 있고, 일부 지역 교육감들은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와중에 신임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 문제를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예고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뜨거운 감자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 자사고는 자율형사립고의 약칭임.

자율형사립고의 도입 배경

- 1974년부터 도입된 고교평준화 제도는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 집중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명문고등학교 진입을 위한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 그러나, 초·중학교 9개년 간의 과정을 통해 심화되고 누적되어 학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학생들을 한 교실에 묶어 둠으로써, 고교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교육대통령을 자임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정부 교육개혁위원회가 1995년 5월 31일(5.31 교육개혁) “고교교육에서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자사고의 뿌리인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 이후, 논의가 거듭되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이해찬 초대 교육부장관은 “시장원리 도입해 교육개혁 이루겠다”면서 “교육도 경쟁과 시장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1999.1.20.한겨레 인터뷰)”를 시작으로, 드디어 2001년 8월 9일 김대중 정부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배려하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을 내놓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2년에 3개교, 2003년에 3개교가 자립형 사립고로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 이어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는 복잡했던 고교 형태를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의 4개 체제로 정비하고 7년여 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하여 전국에 50여 개의 자사고가 출범하였으나, 도중에 학생모집의 어려움과 재정난에 부딪친 일부 자사고들이 다시 일반고로 전환되어 현재 46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외국어고는 현재 31개가 운영되고 있다.

자사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사고 폐지론자들은 자사고를 고교 서열화를 통한 일반고 황폐화, 사교육 증가의 주범, 특권 학교, 입시 위주 교육 등의 온갖 레토릭을 동원한 명분 없는 누명을 씌워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으나,

□ 자사고는 우리나라 공교육을 선도해 왔다.

애초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재정자립이 가능하고 교육 투자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전 사학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사고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자사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학 법인 스스로 수백억에 이르는 교육투자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전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실험하고 그것을 일반고에 일반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 자사고는 우리나라 공교육에 투자해 왔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는 좋은 교육을 할 수는 없는 법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에 있는 46개 자사고는 국민 세금으로 사립고에 지원하는 정부의 소위 ‘재정 결함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필요 재원을 학부모와 학교 법인이 부담함으로써, 국가는 매년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 돈은 매년 일반고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활성화에 쓰여 왔다. 따라서, 자사고를 없애면 교육재정은 더욱 더 열악해 질 것이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훨씬 더 나빠진 경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밥만 먹여주고 실질적인 교육은 부실해 진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포폴리즘의 전형일 뿐이다.

□ 자사고는 사교육 줄이기에 앞장서 왔다.

폐지론자들은 자사고 입시가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온갖 자의적인 통계를 동원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는 아주 오래전 선발고사를 통해 신입생을 뽑았던 과거의 일부 사례들을 침소봉대한 것일 뿐이다.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깜깜이 전형’이라고 부르는 성적을 전혀 보지 않는 무작위 추첨과 인성면접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사고 입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학생은 없다. 이는 자사고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 직후 교육당국이 실시해온 “사교육 영향 평가”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오히려, 많은 자사고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숙사를 만들고 학교 내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부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진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자사고에 학생을 보낸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학교를 신뢰하고 학교 내에서

진로진학 설계가 가능함을 자사고 선택의 이유라고 증언해 주고 있다.

□ 자사고는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현 정부의 많은 고위 인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오죽하면 ‘위장 전입’이 문재인 후보의 인사 5대 공약에 포함되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지방 소재 자사고의 경우, 지역의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켜 왔다. 서울의 경우도 좋은 학교에 배정 받기 위해 위장 전입이 횡행하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이전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 자사고들은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컨대,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강남의 자사고에 진학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로 자녀 교육이 염려된다면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기숙 자사고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자사고에는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사고가 없어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 자사고는 사회적 약자 교육에 앞장서 왔다.

자사고에는 일반고교에 없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20% 학생들을 충원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사회통합전형으로는 기초수급 대상자, 차상위, 차차상위, 중학교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등 경제 곤란자를 최우선 선발하고, 탈북, 보훈, 한부모, 환경미화원, 장애인 등 사회 약자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자사고들은 이 학생들에게 학비지원은 물론이고, 특별 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추가적인 장학지원을 통하여 뒤처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자사고는 외화유출을 감소 시켰다.

고교 평준화는 필연적으로 획일화를 초래했고, 붕어빵 학교에서 붕어빵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초.중학교 9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학력 격차가 심화된 아이들을 고교 수준에서 평준화라는 미명아래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향평준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실망한 많은 학부모들이 유학을 선택했지만, 자사고 등장으로 기대와 인식이 높아지던 2006년을 기점으로 중.고생의 해외 유학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중학생 유학은 2006년 9,246명에서 2015년 3,226명으로, 고등학생 유학은 2006년 6,451명에서 2,432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자사고 제도 도입이 조기 해외유학 수요를 낮추어 외화유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 자사고는 보통 학생 누구나 다닐 수 있다.

폐지론자들은 자사고가 학교 서열화를 부추겨서 일반고를 황폐화 시켰다고 말한다. 일반고를 황폐화 시켰다는 말은 일반고를 모욕하는 파괴적인 말이다. 무슨 근거로 훌륭한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고를 폄훼할 수 있는가? 곳곳에 주변의 자사고를 능가하는 훌륭한 일반고들이 많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학교 서열화는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고등학교가 생기면서부터 있어 왔다. 자사고를 전부 없애고 강제 평등을 통해 자사고에 다니던 학생 서너 명을 일반고로 배정한다고 서열화가 없어지고 일반고가 살아날까? 자사고를 폐지하면 서열화는 모양만 바뀔 뿐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월 46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부자들만 다니는 특권 학교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학비를 못 낼 정도의 어려운 학생들은 “사회통합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고, 자사고들은 이들에 대한 장학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진영논리에 입각한 포퓰리즘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 본인의 이념과 다르면 모두 적폐인가? 자사고를 “암적 존재”, “적폐 세력”으로 죄악시 하였다. 모두 교육수장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모범적 건전 사학으로 100년 넘게 인재를 육성해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학들이 다수 포함된 자사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자사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 그리고 그들로부터 선택 받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들, 더 나아가 모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사고의 졸업 동문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교육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이다. “모든 아이가 우리들의 아이”라는 현 정부의 모토를 생각해 보라. 자사고 재학생도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다. 자사고의 학부모들은 세금 낼 것 다 내고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줄 학비를 스스로 더 부담하고 자녀를 자사고에 진학시켰을 뿐이다. 이것이 죄악인가?
- 신임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루겠다고 공언하였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크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는데 5년 단임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교육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 졌다고 이해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국가교육회의를 입맛에 맞는 적당한 인사들로 구성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는 도구로 쓰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 아테네의 아고라는 광장 민주주의, 민중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플라톤은 일찍이 아테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으로 ‘중우정치(衆愚政治)’의 병폐를 꼽았는데, ❶대

중적 인기 영합, ❷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그릇된 평등관, ❸개인적 절제와 시민적 덕목의 경시, ❹엘리트주의 부정 등이 그것이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여러모로 곱씹어 볼 대목이 아니겠는가?

보수교육감 단일화가 답이다!

김 정 욱

前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간사

I. 들어가는 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온종일돌봄학교 운영, 혁신학교 전국 확대, 고교체제 단순화, 교장 공모제, 대입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제, 국립대 통합 및 공영형 사립대 육성, 보통교육 교육청으로 권한 이양 등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화두는 국민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여 교육의 자유를 향유하게 하려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여 획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시혜적으로 베풀겠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교육의 시혜를 받는 학생들은 경쟁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크게 차별화되지 아니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수시 절대평가제, 대학입학보장 내지는 추천제, 고교체제 단순화 등은 모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사회에 진출하는데 지장이 없는 교육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좌파적 교육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셈이다.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 속에 놓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 양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학부모의 자녀학습권을 실현시킬 교육의 수월성 역시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학교는 수족관처럼 교육이란 먹이를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기계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따른 경쟁적인 노력의 과정이 아니라 평균적인 사회인을 양산하는 복지혜택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핵심 리더들은 어디서 나오게 될까? 자사고나 특목고 또는 해외유학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이 그 몫을 다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

유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반 이념적 교육기관인 셈이다. 이유여하를 따지지 않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려고 드는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적 신념에 투철한 것으로 보이는 김상곤씨를 장관에 임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전국 16개 교육청 중 13개 이상의 교육감이 유사한 이념 성향을 지니고 있다. 교육계는 어떠한가? 전교조의 막강한 행동력과 정치적 영향력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좌파 이념적인 교육 정책의 산실 역할을 하는 사격세가 교육부는 물론 교육시민사회를 압도하고 있다. 국회 역시 좌파 이념에 경도된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과반이 넘는 형편이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17년 지방선거를 통해 우파성향의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만큼 2017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는 절박한 우리들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I. 2014년 교육감선거 결과 요약

시도별	1	2	3	4	5	6	7
서울	조희연	문용린	고승덕	이상면			
	39.08	30.65	24.25	6.00			
경기	이재정	조전혁	김광래	최준영	박용우	정종희	
	36.51	26.11	11.31	9.60	9.20	7.24	
강원	민병희	김선배	김인회				
	46.40	38.11	15.47				
인천	이청연	이본수	김영태	안경수			
	31.89	27.31	20.82	19.96			
부산	김석준	임혜경	박맹언	정승윤	신현철	최부야	최석태
	34.67	22.17	20.39	6.07	5.74	5.58	5.35
충북	김병우	장병학	김석현	손영철			
	44.50	30.86	13.63	10.98			
충남	김지철	서만철	명노희	심성래			
	31.84	30.66	20.26	17.21			
세종	최교진	오광록	홍순승	최태호			
	38.17	24.94	20.74	16.13			
제주	이석문	고창근	양창식	강경찬			
	33.22	26.90	25.19	14.67			
경남	박종훈	권정호	고영진				
	39.41	30.48	30.19				
경북	이영우	이영직	안상섭				
	52.07	26.81	21.11				
대구	우동기	정만진	송인정				
	58.47	28.21	13.31				
울산	김복만	정찬모	김석기	권오영			
	36.17	27.48	22.90	13.43			
대전	설동호	한송동	최한성	이창기	김동건	정상범	
	31.42	15.94	15.11	14.25	14.08	9.17	
광주	장휘국	양형일	윤봉근	김영수	김왕복		
	47.60	31.76	9.79	5.61	5.22		
전남	장만채	김경택	김동철				
	56.34	29.25	14.40				
전북	김승환	이미영	유홍열	신환철			
	55.00	19.79	12.80	12.38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부산 충북 충남 세종 제주 경남 이상 10곳 모두 진보단일화 후보 상대로 보수후보 단일화 실패로 낙선한 지역임.

III. 보수후보단일화 운동의 실패 요인_2014년 경험을 바탕으로

1. 단일화 기구의 대표성 및 우파보수시민사회의 결집력 미흡

서울의 경우 우파보수시민사회단체들부터 문용린 후보 지지와 고승덕 후보 지지로 처음부터 양분되었고 단일화 기구가 시민사회단체들을 통합하는데 실패한 채 단일화를 추진함.

2. 단일화 기구에 대한 보수 후보들의 전폭적인 신뢰 미흡

충북, 부산의 경우 단일화 기구에 대한 후보들의 불신으로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불신을 초래한 주요 요인은 단일화기구를 주도하는 세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문제였음.

3. 단일화 기구 내부의 제 세력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단일화 지연 또는 단일화 효과 반감

단일화 기구 내 세력 간 의견 차이(경기/제주: 교총/공학연, 인천:공학연/미래)로 내홍 겪음.

4. 단일화 기구의 후보 검증 능력 미흡

강원, 세종 : 경쟁력이 미흡한 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선정함

5. 단일화 기구의 전국적인 역량 부족

대구, 경남 : 단일후보를 내세웠으나 지지선언에 그침

경북, 울산, 대전 : 후보들에 대한 장악력 부족으로 단일화 논의 자체를 포기

IV. 외부적인 실패요인

1. 우파보수시민사회 내부로부터 동기가 유발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선라인이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 교육계 인사들에게 권고하고, 이에 따라 미래교육국민포럼(이돈희)이 주도하겠다고 나서자 공학연과 한국교총이 지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미래교육국민포럼(이돈희),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이상훈),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조금세)이 함께 시작했고, 후에 인성문화포럼(지연식_문용린 조직), 사학법인협의회(최기현) 등이 추가로 참여함. 결과적으로 우파보수시민사회는 관련단체 중심의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외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들마저 고승덕 후보 지지단체로 일부

갈라지는 등 제대로 힘을 실지 못함.

2. 새누리당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모호하고 애매한 자세

1) 민주당은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 비공식적으로 지구당 인력이 동원되는 등 잡음이 많을 정도로 단일화추진기구에 힘을 실고 나아가 경선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새누리당은 방관적인 자세였고 오히려 지자체장에게 보조적인 후보가 나서기를 바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임.

2) 서울의 경우 후보 추대 과정에서는 물론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오히려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 사이에 개입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음.

3. 단일화 기구에 참여한 제 세력이 단일화 자체 보다는 자기 세력이 선호하는 후보를 내세우고자 서로 눈치싸움을 하면서 후보들에게 신뢰성을 잃어버린 요인도 큼. 이 점에 있어서 미래교육국민포럼, 한국교총, 공학연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V. 2017년을 위한 단일화 운동의 방향

1. 단일화 기구는 우파보수시민사회 제 세력이 결집하여 힘을 실어주되 각 단체가 단일화 기구에 들어오지 않고 공정한 단일화 실무업무를 추진할 실무진만 임명하여 소규모 사무국으로 진행함.

2. 한국교총 등 교육관련 제 단체는 단일화 기구의 실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신 훌륭한 교육감 후보를 발굴하여 단일화에 참여시키는 역할에 전념함.

3. 단일화 기구는 우파보수를 대변하는 제도권 정당과 긴밀한 협조 및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함.

4. 단일화 경선은 2017년 2월까지는 완료하여 예비후보 등록으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교육감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비용을 단일화 경선을 위해 사용토록 하여 광역선거에 대한 선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줌.

5. 경선 방법은 시도별로 각 지역을 방문하여 5, 6회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수우파 제 단체 연대로 구성된 원로회의(15인 이내)가 실무능력을 중심으로 능력있고 공정한 인사들로 사무국(9인 이내)을 구성하여 추진하되 보수 후보로 적합한 후보를 5명 이내로 압축하고, 압축된 후보는 여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등 후보 간 합의된 방식에 의거 사무국이 공정한 경선 실시함.

6. 전국적인 단일화 기구는 우선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포함한 중부권, 충북 충남 대전을 중심한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등 12개 시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함.

VI. 끝맺는 말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 셋째도 단합!

[illegible]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612호(순화동, 바비엥3차)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